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 ▶ 이 자료에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이라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해당 고시'는 각각 '특례법', '특례법 시행령', '특례법 시행규칙', '특례고시'라고 지칭함
- ▶ 자료의 내용이 협정·법·령·규칙과 다를 때에는 협정·법·령·규칙을 우선 적용함

- 목 차 -

- I. 일반사항
 - 1. 협정 적용 영역
 - 2. 관세인하 또는 철폐
- II. 원산지 기준
- III. 원산지 신고(증명)
 - 1. 증명방식
 - 2.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
 - 3. 원산지신고서 작성 및 서식
 - 4. HS코드 기재
- IV. 협정관세의 적용
 - 1. 협정발효 적용시점
 - 2. 특혜관세 대우 신청
 - 3. 원산지신고서 제출 면제
 - 4. 수량별 차등협정관세(TRQ) 적용
 - 5.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 적용
 - 6. 계절관세 적용
- V. 기록보관
- VI. 수출관련 의무
- VII. 직접운송
- VIII. 원산지검증 및 특혜관세대우 거부
- IX. 기타
 - 1. 관세 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 등
 - 2. 수리 개조물품
 - 3. 사전심사

I. 일반 사항

1 협정적용 영역

대한민국(원산지 부호 KR)	뉴질랜드(원산지 부호 NZ)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 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뉴질랜드의 영역과 뉴질랜드가 국제법에 따라 천연 자원과 관련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해저 및 하층토 (토켈라우 제외)

※ 협정문 제1.5조(정의)

2 관세 철폐

☐ 협정적용 대상

- 관세 철폐는 협정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적용

※ 협정문 제2.4조(관세 철폐) 제2항

☐ 양허표 내용

-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수출시 : 뉴질랜드 관세 양허표 확인
-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수입시 : 한국 관세 양허표 확인

※ 부속서-2가(관세 철폐)

<한-뉴질랜드 FTA 상품양허 유형>

양허유형	내 용
0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철폐
3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3년차 1월 1일 무관세)
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5년차 1월 1일 무관세)
6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6년차 1월 1일 무관세)
7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7년차 1월 1일 무관세)
12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2년차 1월 1일 무관세)
13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3년차 1월 1일 무관세)
1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17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7년차 1월 1일 무관세)
18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8년차 1월 1일 무관세)
2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B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50퍼센트 인하, 그 이후부터 그 관세율 유지
S-1	- 12.1일 ~ 4.30 : 무관세 - 5.1일 ~ 11.30 :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S-2	- 6.1일 ~ 11.30 : 기준관세율 - 12.1일 ~ 5.31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이행 5년차 1월 1일 무관세)
E	기준관세율 유지
X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않음

* “이행 1년차”란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

* 이행 2년차 부터는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II. 원산지 기준

□ 원산지 상품(협정문 3.2조)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이 이 장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가. 당사국에서 상품이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나. 품목별 원산지 규정(부속서 3-가)에 명시된 세번 변경, 역내가치포함 비율(제3.4조), 또는 그 밖의 요건에 합치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이 전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다. 상품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경우

□ 원산지 요건충족 기준으로서 협정문에서는 원산지 일반 기준을, 부속서에서는 개별 품목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s)을 규정

- 일반 기준 : 완전생산 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 등을 규정

-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 HS 6단위 5,052개('07년 기준)

□ 완전 생산기준(3.3조) : 당사국 영역에서 채취되거나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 등 11개 항목

□ 역내가치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협정문 제3.4조)

- 공제법, 집적법 중 선택

□ 누적기준(3.6조)

- 타 당사국의 상품이 당사국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상품에 결합이 일어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어느 한쪽 또는 양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최소허용수준(3.7조)

- 비원산지 재료가 해당 품목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치가 상품가치의 10% 이하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제50류-제63류(섬유 및 의류)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치가 상품가치의 10% 이하인 경우 또는 비원산지 재료의 총중량이 상품중량의 10%이하인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불인정 공정(3.14조)

-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 다. 병·캔·플라스틱·가방·케이스·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 라. 세탁, 세척,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마. 연마, 단순 분쇄 또는 파쇄 또는 단순 절단
- 바.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또는
- 사.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물품의 부품을 단순히 조립하거나 상품을 부품으로 분해하는 것

Ⅲ. 원산지증명

1 원산지 증명방식 : 자율발급

□ [발급 주체]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수출자의 원산지 신고서 발급 조건
 -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에 관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신고서

※ 협정문 제3.19조(원산지의 증명) 5항 가호, 나호, 다호

□ [발급시기] 제한 없음

□ [원산지 신고 방식] 단일 방식 또는 포괄 원산지 신고서

- 하나 이상의 상품의 단일 수입
- 포괄 원산지 신고서
 - 최초 신고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 명시된 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동일상품의 복수 수입(※ 포괄증명기간 내에 수입되는 것을 기준)
 - 포괄기간은 C/O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 있으나 C/O의 유효기간(서명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동 기간을 명시할 수 없음

2 원산지 신고서 유효기간

☐ 원산지신고서는 서명일로부터 2년간 유효함

3 원산지 신고서 작성방법 및 서식

☐ [원산지 신고] 송품장 방식 및 권고서식

○ 원산지 신고서는 8가지 요소 반드시 포함(협정 제3.19조)

- ① 증명인의 성명·연락처 ② 수입자(아는 경우) ③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 ④ 생산자(아는 경우) ⑤ 6단위 HS ⑥ 원산지규정 ⑦ 원산지신고일자
- ⑧ 포괄기간(포괄증명인 경우)

○ 권고서식 : 협정 부속서 “3-다(예시 1, 2)” 사용 권장

- [예시 1] 수출자, 생산자가 수출송장 또는 상품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송품장 등)에 영어로 작성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I..... ¹⁾ being the ²⁾
	hereby declare that the goods enumerated on this invoice are originating from ³⁾ in that they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Chapter 3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of the Kore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Observations: ⁴⁾
	Signature _____ Date: _____ ⁵⁾

작성방법	위 원산지신고 문안을 송품장 또는 물품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이하 “송품장 등”)에 영문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 1) 작성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성명 및 직책을 기재. 필요한 경우, 신원확인 정보를 얻기 위한 상세 연락처를 포함할 수 있음 2) 수출자(exporter), 생산자(producer) 또는 생산 및 수출자(producer and exporter) 중 택일하여 기재 3)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the Republic of Korea 또는 New Zealand)를 기재 4) 비고(Observations)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 다만, 송품장 등에 이미 그러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가. 물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나. 물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경우에 한한다) 다. 물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Code)에 따른 6단위 세번 및 상품명 마. 해당 물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기준 바. 원산지신고 일자 사. 협정 제3.19조제7항나호의 규정에 따른 포괄신고의 경우에는 원산지신고가 증명하는 포괄기간 5) 서명한 일자를 기재
------	---

- [예시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작성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송품장 등에 기재방식이 아닌 신고서 방식으로 작성하고자 할 경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4서식]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Origin Declaration Kore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Reference No.		2. Blanket Period: YYYY MM DD YYYY MM DD From: / / / To: / / /			
3. Produc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Reference No.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7. Preference Criterion	8. Producer	9. Value Test	10. Country of origin
11. Observations: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declaration,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declaration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declaration.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This declaration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2.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YYYY MM DD Date: / / /		Telephone: Fax: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작성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송품장 등에 기재방식이 아닌 신고서 방식으로 작성하고자 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이 서식을 명료하게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인쇄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 제1란에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참조번호(선택사항)를 적습니다.
- 제2란은 이 증명서가 제5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포괄증명기간(최대 12개월)을 적습니다. “FROM” 은 증명서가 포괄증명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명서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TO” 는 포괄증명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수입은 두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3란의 생산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제1란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그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번호(선택사항)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신고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수” 로 기재하고 제5란의 물품과 상호 참조되는,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 번호(선택사항)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밀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제4란에는 수입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 제5란에는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각 물품의 수량, 측정단위(가능한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한다) 및 상업 송품장에 표시된 송품장번호를 적습니다. 송품장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유의 참조번호(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번호 등)를 적습니다.
- 제6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 제7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뉴질랜드와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 문구	원산지결정기준
A	협정 제3.2조 가호에 따라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B	협정 제3.2조 다호에 따라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C	협정 제3.2조 나호에 따라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D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지만 특정 비원산지 재료가 필요한 세번번경을 거치지 않아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E	협정 부속서 3-나(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 근거하여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 제8란에는 제5란의 물품을 작성자가 생산한 경우 ‘YES’ 라고 적습니다. 작성자가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NO’ 를 적고 그 옆에 아래의 표에 따라 (1), (2), (3)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기재 문구	원산지증명서 작성근거
(1)	물품이 원산지물품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작성자의 인지
(2)	물품이 원산지물품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진술(원산지신고서를 제외한다)에 대한 작성자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원산지신고서(해당 물품에 대하여 작성되고 서명)

- 제9란에는 제5란의 물품이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정 제3.4조의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 ‘BD’ ,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 ‘BU’ 를 적습니다.
- 제10란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KR’ 또는 ‘NZ’)를 기재합니다.
- 제11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 품목분류 및 역내부가가치 등에 대한 판정을 받은 경우 이 증명서와 관련된 다른 참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발급당국, 참조번호 및 발급날짜 포함)
- 제12란에는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이 란의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4 HS 코드 기재

☐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은 ‘HS 2007’ 기준으로 협상 타결

☐ [관련법령]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시 행 령 : 협정관세율(양허표) 규정 (HSK 2015기준)
- 시행규칙 : 원산지결정기준 규정 (HS 2007기준)

☐ [HS코드 기재] 원산지신고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수입신고서
上 기재방법

서 류 명	품목번호 작성기준
원산지 신고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HS 2007
수출입신고서	HSK 2015

IV. 협정관세 적용

1 협정 적용시점

☐ 수출입물품에 대한 협정발효 적용 시점

- 협정발효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 협정이 발효한 날 또는 그 이후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협정 발효 전에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신고서도 인정 가능

2 특혜관세대우 신청

□ 수입자 요건

- 수입자가 수입 시점에 특혜관세대우 신청 가능
-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 신고를 할 것
- 신고 당시 원산지 증명을 소지할 것
- 수입 당사국 관세행정기관의 요청에 대하여, 원산지 신고서 사본 및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 수입에 관련된 그러한 그 밖의 서류를 제공할 것

* 수입자는 원산지 신고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 신고서를 정정하고 모든 관세를 납부

□ 수입 이후 특혜관세 신청

-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 협정관세적용 신청서에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원산지 신고서 및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

※ 협정문 제3.18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

3 원산지 신고서 제출 면제

□ 과세가격이 미화 1,000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 (예외) 원산지 신고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 협정문 제3.20조(원산지 신고서 면제)

4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RQ 품목) 관련 사항

□ [선착순 방식 TRQ 품목]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순서에 따라 정해진 수량까지는 무관세, 초과물량은 기준세율 유지

품 명	1년차 적용물량(M/T)	관세율(%)	
		할당물량	초과물량
홍합 [1605.90-9040(HS 2007), 1605.53-9000(HS 2012)]	800(선착순) 800(추천방식)	0	20

- 1년차 쿼터내 물량 1,600톤의 50%는 선착순 방식, 나머지 50%는 추천방식으로 운영

- 16년차 이후 16년차 물량 동일하게 유지

이행년차	1	2	3	4	5	6	7	8
물량	1,600	1,701	1,808	1,922	2,043	2,172	2,308	2,454
이행년차	9	10	11	12	13	14	15	16
물량	2,608	2,773	2,947	3,133	3,331	3,540	3,763	3,999

- 실제반입되는 수량이 수입신고수량과 같은 수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서류제출대상으로 운영

※ 송품장, 선하증권 등을 확인하여 동일 수량인지 확인

○ 선착순 방식 TRQ 운영방법(FTA 관세특례법, FTA 특례고시 제4장)

1. (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운영
2. (통관절차)
 - 한도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
 - 한도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잔여수량을 그날에 수입신고된 수량(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한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
 - 배분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 한도수량도달일의 다음날 순서대로 배분
3. (배분에 따른 세액보정)
 - 통관지세관장 : 배분되어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
 - 수입자 : 관세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액을 보정
 - ※ 가산이자는 없음(동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4. (잔여수량의 게시) 배분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품목별 총수량·사용수량과 잔여수량을 관세청 FTA포탈(ffa.customs.go.kr)을 통해 게시
5. 다만 할당물량이 소진되었음을 알리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운송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할당물량내 관세율을 적용
 - * 동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관련기관 협의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 [수입권 추천* 방식 TRQ 품목]

* [붙임 1]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ariff-Rate Quotas) 참조

- 주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추천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
- 농축산물 : 수입권 공매방식과 수입권 배분방식 병행*
 - *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총 2개 대행기관
- 수산물(홍합) : 수입권 공매방식(※ 한국수산물무역협회)

5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ASG)* 관련 사항

* ASG : Agricultural Safeguard

-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은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가 적용되는 물품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협정문 부속서 2-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 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1000, 0202.20.9000 및 0202.3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37,000	37,740	38,495	39,265	40,050	40,851
특별긴급관세율(%)	40.0	40.0	40.0	40.0	40.0	30.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1,668	42,501	43,351	44,218	45,103	46,005
특별긴급관세율(%)	30.0	30.0	30.0	30.0	24.0	24.0
이행년도	13	14	15	16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6,925	47,863	48,821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4.0	24.0	24.0	0.0		

-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운송중인 상품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됨.
다만, 이 물량은 차기연도 동안 해당상품의 수입물량으로 계산될 수 있음

6 계절관세 적용품목

○ 한-뉴질랜드 FTA 계절관세 해당 물품 : 감자, 호박류

- 적용기준 : 수입신고일자

- 다만, 세율이 인상될 예정인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바, 계절관세 적용기간(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에 입항하는 물품은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함

《한-뉴질랜드 FTA 계절관세 품목》

HS No	품 명	적용 기간 (이행 1년차)		비고
		관세율 (%)	적 용 조 건	
0701.90-0000	감자(칩용)	0	12월 ~ 4월 수입되는 물품	무관세
		283.7	5월 ~ 11월 수입되는 물품	15단계 균등철폐
0709.93-3000	호박류 (쿠쿠르비타종)	21.6	12월 ~ 5월 수입되는 물품	5단계 균등철폐
		27	6월 ~ 11월 수입되는 물품	기준세율유지
0709.99-9000	호박류(쿠쿠르비타종 제외)	21.6	12월 ~ 5월 수입되는 물품	5단계 균등철폐
		27	6월 ~ 11월 수입되는 물품	기준세율유지

※ 참고자료

《한-뉴질랜드 FTA 관세율 구분부호》

부 호	내 용
FNZ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물품
FNZ2 FNZ3 FNZ4 FNZ5 FNZ6 FNZ7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NZ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NZ2, FNZ3, FNZ4, FNZ5, FNZ6, FNZ7을 순차적으로 부여
FNZ8	- 수입쿼터 선착순 방식을 적용하는 물품 중 수입쿼터 물량내의 물품
FNZ9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FNZ10	- 긴급수입제한조치품목 중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물품

[붙임 1]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물량배정방식(제3조 관련)

	품목구분	협정문상의 HS 코드	HS 2015 코드	품 명	최초년도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
1	탈지분유	0402-10-1010	좌동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 농축/지방분 1.5% 이하)	1,5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0402-10-1090	좌동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 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0402-10-9000	좌동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 지방분 1.5% 이하)			
		0403-90-1000	좌동	버터밀크			
	전지분유	0402-21-1000	좌동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 농축/지방분 1.5% 초과)			
		0402-21-9000	좌동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 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0402-29-0000	좌동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 지방분 1.5% 초과)			
	연 유	0402-91-1000	좌동	무당연유			
		0402-91-9000	좌동	연유(무당연유 이외)			
		0402-99-1000	좌동	가당연유			
		0402-99-9000	좌동	연유(가당연유 이외)			

	품목구분	협정문상의 HS 코드	HS 2015 코드	품 명	최초년도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
2	버 터	0405-10-0000 0405-90-0000	좌동 좌동	버터 버터(기타)	800톤	한국수산물유통공사	수입권 구매
3	치즈류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치즈(신선/ 모차렐라 치즈) 치즈(신선/ 크림치즈) 치즈(신선/ 기타) 치즈(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 치즈(가공/갈았거나 분상의 것은 제외) 기타치즈(체더 치즈) 기타치즈(가우더 치즈) 기타치즈(카망베르 치즈) 기타치즈(에멘탈치즈) 기타치즈(기타)	7,000톤	한국농업육우 협회	수입권 배분
4	조제분유 (유아용)	1901-10-1010 1901-10-1090	좌동 좌동	조제분유(유아용) 유아용의 조제식료품(기타)	230톤	한국농업육우 협회	수입권 배분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품 목	세 번 (2014 HS code)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탈지분유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3-90-1000	1,500	1,545	1,591	1,639	1,688	1,739	1,791	1,845	1,900	1,957	10년 물량 유지									
	전지분유	0402-21-1000 0402-21-9000 0402-29-0000																				
	연 유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0402-99-9000																				
2	버터	0405-10-0000 0405-90-0000	800	824	849	874	900	927	955	984	1,013	무제한										
3	치즈류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7,000	7,210	7,426	7,649	7,879	8,115	5,669	5,839	6,014	6,194	6,380	2,112	2,175	2,241	무제한					
4	조제분유 (유아용)	1901-10-1010 1901-10-1090	230	235	239	244	249	254	259	264	269	275	280	286	3	3	무제한					

* 치즈 (이행 1년차부터 6년차)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이행 7년차부터 11년차)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이행 12년차부터 14년차)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 조제분유 (이행 1년차부터 12년차) 1901101010, 1901101090, (이행 13년차부터 14년차) 1901101090

V. 기록보관

1 수출자의 기록보관

- ☐ 서류보관기간 : 원산지 신고서 서명일 후 5년 또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중 더 긴 기간
- ☐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

-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 원산지증빙 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 수출신고필증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2 생산자의 기록보관

- ☐ 서류보관기간 : 원산지 신고서 서명일 후 5년 또는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일로부터 5년 중 더 긴 기간
- ☐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

- 수출자 또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
- 원산지증빙 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3 수입자의 기록보관

- ☐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원산지 신고서 사본을 포함한 그러한 서류를 상품 수입일 후 5년 동안 보관

VI. 수출관련 의무

- ☐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서명한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되거나 허위인 원산지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잘못되거나 허위인 증거를 제공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 신고서의 정확성 또는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모든 변경사항을 수입자와 수입 및 수출 당사국 관세행정기관에 가능한 빨리 통지

※ 한-뉴질랜드 FTA 제3.23조 수출에 관한 의무

VII. 직접운송

- ☐ 원산지 상품은 비당사국 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함
- ☐ 비당사국(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상품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지위를 인정하지 않음

- ① 그 상품이 하역, 일시적 보관,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 분리,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수입 당사국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어떠한 그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 또는
- ②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난 경우

※ 협정문 제3.16조 직접 운송
 ※ 협정문 제3.26조 직접 운송 - 준수

VIII. 원산지 검증 및 협정관세 적용 배제

1 원산지 검증 방법 : 서면조사, 현지조사

- ☐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추가적인 정보 요청
 - 추가 정보에 대한 서면 요청에 대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기간 내에 응답
-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추가적인 정보 요청
 - 추가 정보에 대한 서면 요청에 대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기간 내에 응답
- ☐ 시설 및 상품의 생산과정을 시찰하고 원산지 관련 기록을 검토를 위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동행)
 -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방문 수행 의사에 대한 서면통보
 -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 필요

2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 ☐ (특혜관세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
 -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국의 추가 정보에 대한 서면 요청에 대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 배제 가능
 - 검증 방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 배제 가능
 -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음을 당사국이 적발한 경우
 - 특혜관세대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 (특혜관세 적용중지) 관세행정기관이 동일한 상품이 특혜관세대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결정했을 경우, 상품이 협정에서 규정하는 것을 준수한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 그 상품의 이후 수입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특혜관세 대우를 중지 가능
- ☐ (결과 통보) 검증 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을 제공
- ☐ (결과 통보에 대한 정보 제공)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7항에 따라 서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상품의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에 대한 의견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
- ☐ (검증 기간) 수입 당사국은 검증 과정의 시작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대한 결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법적 근거 및 조사결과 통보

3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상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IX. 기타 집행사항

1 관세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

- ☐ 원산지와 관계없이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일시반입을 허용(협정 제2.5조)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 해당물품의 일시반입 요건

1. 뉴질랜드의 국민 또는 뉴질랜드 거주자에 의하여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영업활동·거래·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2. 우리나라에서 판매, 임대, 처분, 양도되지 아니할 것
3. 국제 관세 협약에 따른 담보를 수반할 것
4.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
5.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1년 이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될 것
7. 자국 국내법에 따라 그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 가능할 것

- 감면관세액의 100%이내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 협정문 제25조 상품의 일시 반입

-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 등 무관세 반입(담배 제외)

- 상용견본, 인쇄광고물,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8조의4 (특송물품 미화 100달러 이하)에 따라 수입신고 생략 물품

※ 협정문 제27조 무시할만한가치의 상업용견본품과인쇄된 광고물의무관세반입

※ 협정문 제4.8조 특송화물

2 수리 또는 개조물품

-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 수리 또는 개조*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뉴질랜드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재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 수리·가공을 초과하는 범위 - [참조]협정 제 26조(수리 또는 개조후 재반입되는 상품)

- ✓ 본질적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 ✓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당사국 영역으로 일시적 반입 상품

※ 협정문 제26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3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 수입신고 前 사전심사 요청

- 신청인 : 수입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신청대상 : 품목분류,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 사전심사서의 발급 : 품목분류(40일), 원산지(90일)
- 효력발생 : 결정서가 발급된 날 또는 사전심사서에 명시된 다른 날

○ 유효기간 : 3년

□ 사전심사결과 수정, 철회

- 가. 심사가 잘못된 사실이나 법에 기초하였던 경우
 나. 제공된 정보가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다. 협정에 합치하는 국내법상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
 라. 심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사실 또는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 심사가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에 기초한 경우 사전심사 결과 소급 수정, 철회

□ 처리절차(특례법 14조)

단계	세부단계	주 체	주요 내용
신청	사전심사 신청	신청인	▶ 서류제출(신청서, 심사요청관련서류) ▶ 수수료(3만원)
접수	신청서류 확인	접수부서	▶ 해당부서가 아닌 경우 담당부서로 이송
	사전심사 접수	주관부서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접수부서가 주관부서로서 해당부서에 심사사항 통보 ▶ 사전심사 신청대장 기록, 수수료 수납
검토 결정	신청내용 심사·검토	주관부서	▶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정처리
		심사부서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담당 부서는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만료7일전까지)
	반려 및 보정	주관부서	▶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반려 ▶ 보정 : 5일 이상의 기간
	위원회 상정·검토	주관부서 심사부서	▶ 위원회 상정 : 심사부서에서 결정이 곤란 하다고 판단 (예:원산지확인위원회)
통지 공표	사전심사서 통지	주관부서	▶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결과 인터넷 공표	주관부서	▶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 사전심사 결과 등재
사후 관리	이의제기	신청인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이의제기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주관부서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 보정요구 가능 : 20일 이내
	사전심사 변경	신청인 주관부서	▶ 사실관계, 상황변경 등의 경우 사전 심사내용 변경·철회